

인천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나15153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칸건설

변론 종결 2015. 12. 16.

판결 선고 2016. 1. 20.

제 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9. 15. 선고 2014가단50554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토지를 인도하며, 2014. 7. 9.부터 위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9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금덕희, 판사 김신영, 판사 전경욱

이 유

1. 토 지

가. 인천 용진군 F 전 470㎡

나. 인천 용진군 G 전 74㎡

2. 건 물

인천 용진군 F, G 지상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지붕 4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층 12.48㎡

2층 176.28㎡

3층 176.28㎡

4층 176.28㎡. 끝.